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·응답」 마련·배포 알림 및 협조 요청

1.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('23.1.1)과 관련됩니다.
2.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('23.1.1~12.31) 종료를 앞두고 현장 어려움 호소와 유사 질의가 빈번하여 영업자 등 혼란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 「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·응답」을 마련·배포하오니, 관할 영업자, 회원사, 지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·확산하여 주시기를 협조요청 드립니다.
3. 본 질의·응답은 그간 공유드린 「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(FAQ, '23.1.18)」 중 일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본 질의·응답은 식품안전나라(<http://foodsafetykorea.go.kr> > 식품·안전 > 식품표시광고 > 소비기한)누리집에 파일로 게시하고 있으니, 교육·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·응답(231208)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식약처, 지자체, 협회 등

주무관 손진혁 사무관 최충렬 식품표시광고 전결 2023. 12. 8. 정책과장 김철희

협조자

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-17768 (2023. 12. 8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오송생명과학단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  
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

전화번호 043-719-2189 팩스번호 043-719-2180 / [sontoly33@korea.kr](mailto:sontoly33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